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517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14. 7. 17.

판결 선고2014. 8.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C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임야 3,177m², 위 E 임야 2,173m²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84,455,47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남편인 F과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있는데, 피고 B은 원고의 차남이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로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서귀포시 D 임야 3,177m², 위 E 임야 2,173m²(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9. 10. 28.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1/4 지분씩 2009. 10.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융상품 양도

1) 원고는 신한은행 계좌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금융상품(이하 '이 사건 금융상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

1	봉쥬르 차이나 주식2호 A	29,702,971	18,319,527	-38.32
2	미래에셋디스커버리 주식3호	24,752,477	18,286,923	-26.12
3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	50,000,000	-	
4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	50,000,000	-	

2) 원고는 2009. 10.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을 양도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과 대금 수령

1) 원고는 서귀포시 G 임야 5,977m², 서귀포시 H 임야 992m², 위 H 임야 1,233m²(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시조카인 I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2009.10. 8. 및 2009. 10. 9.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 2억 5,000만 원은 I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금원 중 6,000만 원이 2009. 11. 10.부터 2009. 2. 18.까지 피고 C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마.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은 2011. 12. 5.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자신이 소유한 1/4 지분에 관하여 2011. 11.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금융상품 관련 금전지급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막내 딸인 J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분쟁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J이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거래한 행위로 과세관청에서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면서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재산을 피고들 명의로 변경하자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금융상품을 피고 B 명의로 각각 변경하였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마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또한 피고 C이 그 후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피고 B이 소유한 1/4 지분을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피고 C이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횡령·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금융상품의 납입금액 합계 1억 5,445만 5,448원 중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445만 5,448원(소장에 기재된 '5,445만 5,478원'은 오키로 보인다)은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피고 B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위 5,445만 5,44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J 등에 대한 소송 경과

(1) 원고는 차녀 J와 J의 남편인 K을 상대로 2009.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4289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0.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0나6779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21. 항소가 기각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세금 부과

원고는 2010. 2.경 서초세무서로부터 1억 3,076만 6,000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관리상황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각 1/4 지분의 등기필정보(을 제1호증)를 보유하고 있고, 위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각 1/4 지분과 이 사건 금융상품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J 등을 상대로 2009.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4289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J와 분쟁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을 양도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시점이 2009. 10. 27.경과 2009. 10. 28.로서 아주 근접해 있다. 원고는 그 후인 2010. 2.경 서초세무서로부터 1억 3,076만 6,000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각 1/4 지분과 이 사건 금융상품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그 등기필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위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납입금액 합계 1억 5,445만 5,448원의 이 사건 금융상품을 양도받으면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납입금액 5,445만 5,448원에 해당하는 위 [표] 기재 순번 1, 2의 금융상품의 경우 양도 무렵 수익률이 -26.12% 내지 -38.32%에 이르는 등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각 1/4 지분과 이 사건 금융상품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F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I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I을 기망하거나 I과 통모하여 I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 B의 사기 또는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F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위 6,000만 원 중 원고의 몫인 1/2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F의 I에 대한 형사고소

(1) 원고의 남편인 F은 2010. 3. 22. 1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 2억 5,000만원 중 I의 몫인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I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였다.

(2) F은 위 사건의 고소장에 F, M와 I 사이에 작성된 2009. 8. 25.자 합의서(갑 제12호증의 2)를 첨부하였다. 위 합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F이 제세공과금 및 양도세 일체를 부담하고 I은 2,000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받는다. M는 위와 같은 사항을 보증하기로 한다. 매각대금의 소유권은 F에게 있음을 각서한다.'라는 것이다.

(3) 원고는 2010. 4. 13.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원고는 수사기관에 2010. 4. 6.자 확인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I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였고, I에게 이를 매각하도록 허락하였다. I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수고비와 명의대여에 따른 세금과 벌과금의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

② I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가 소유한 용인, 역삼, 성남, 세검정 등 일련의 부동산을 투자·관리해 왔다. 그중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마지막으로 남은 부동산이고, I은 오랜 세월 동안 본인의 자산을 잘 관리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항상 마지막 한 귀퉁이는 I에게 주겠다고 말해왔다.

③ I에 대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관련한 형사고소는 돈에 눈이 먼 자식들(오랜 세월 동안 무직상태인 장남 M와 부동산 투기 실패로 파탄에 빠진 차녀 J)이 천리에 반하여 정신이 혼미한 남편 F을 부추겨 일으킨 것으로 사료된다. I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4) I은 2010. 4. 26.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I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F이 아니라 원고가 I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것이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 2억 5,000만 원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다. 그중 3,000만 원은 세금으로 납부하였고, 5,600만 원은 피고 B에게 주었다. 원고와 F이 J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데, 피고 B에게 그 소송경비로 5,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검찰은 2010. 6. 24. I의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 이유는 '원고, 피고 B과 I이 일치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것인지 F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F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다.

나) 원고와 F의 I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

(1) 원고와 F은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4356호로 I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원고와 F은 N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I 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F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매각대금 중 2,000만 원을 I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 2억 5,000만 원이 I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따라서 I은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 2억 5,000만 원 중 I의 몫인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다.

(2) 위 소송과정에서 2011. 10. 10. 원고, F과 I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내용은 'I은 원고와 F에게 2011. 11. 30.까지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I이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돈에 대하여 다 지급할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와 F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9,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먼저 피고 B이 I을 기망하거나 I과 통모하여 I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I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I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 2억 5,000만 원이 I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I은 그중 6,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이 I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6,000만 원을 지급받는 데 I을 기망하거나 I과 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F의 I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I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수고비와 명의대여에 따른 세금과 벌과금의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I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 2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세금으로 납부하였고, 5,600만 원은 피고 B에게 주었다. 원고와 F이 J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데, 피고 B에게 그 소송경비로 5,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J 등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4289호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변호사 수임료 5,000만 원, 가압류 등 소송비용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이 I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6,000만 원을 지급받는 데 I을 기망하거나 I과 통모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전현정

판사이해빈

판사백효민